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9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3. 27.

이쌍자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04. 0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4. 1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이쌍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성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5호
 - 예고기간: 2024. 4. 1.(월) ~ 2024. 4. 8.(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
 -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 지원 대상과 지급방법을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위탁(안 제5조)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
 -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보편적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사업대상자가 1,400여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4. 1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